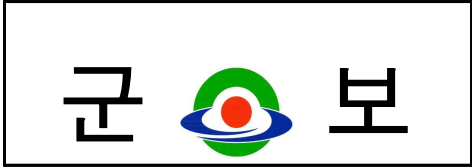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63호 2024. 10. 17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하천점용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4-129호)

공 고

○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4-1468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0월 17일

예 천 군 수 (인)

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 주 소	장태기(보영건설(주))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4길 58
위 치	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148-4, 151-6번지
점용면적	54㎡
점용목적	공작물의 설치
사업개요	내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실
점용기간	2024년 10월 17일 ~ 2027년 06월 19일

예천군 공고 제2024-1468호

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17일

예 천



1. 조례명 :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(안)

2. 개정이유

-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류·협력사업 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,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관계인구*를 활성화하고자 함.

*관계인구: 예천군에 정주하지는 않지만, 지속적으로 예천군에 관심을 갖고 정기·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외지인

3. 주요내용

가. 교류·협력사업 지원 범위(안 제5조)

- 출향인을 위한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 추가 신설

나. 교류·협력 사업 지원내용(안 제6조)

- 군내 축제와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,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, 교통비 등 경비
- 문화·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
- 토론회, 세미나, 워크숍, 설명회, 간담회 참석자 식비, 교통비 등 경비
- 고향 방문 사업과 고향 탐방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,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식비, 교통비, 숙박비 등 경비

4. 개정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hong0516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총무과

3) 팩스 : 054-650-63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(전화 : 054-650-683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군민”을 “예천군민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예천군 이외”를 “군 이외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군민”을 “예천군민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)”을 “(교류·협력사업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사업”을 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”으로, “행정·재정적”을 “행정적·재정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출향인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

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지원내용)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내 축제와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,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, 교통비 등 경비

2. 문화·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
3. 토론회, 세미나, 워크숍, 설명회, 간담회 참석자 식비, 교통비 등 경비
4.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,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식비, 교통비, 숙박비 등 경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, <u>군민</u> 의 역량 결집과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예천</u> <u>군민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“출향인”이란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출신으로 <u>예천군 이외</u> 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(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)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----- ----- <u>군</u> <u>이외</u> ----- ----- -----.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출향인의 지위)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<u>군민</u> 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	제4조(출향인의 지위) ----- ----- ----- <u>예천군민</u> ----- ----- -----.
제5조(<u>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</u>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·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<u>사업</u> 수행	제5조(<u>교류·협력사업 지원</u>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----- ----- <u>사업을 추</u>

에 필요한 <u>행정·재정적</u>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제6조 ~ 제8조</u> (생략)	<u>진할 수 있고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--- 행정적·재정적 - -----.</u>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출향인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<u>제6조(지원내용)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군내 축제와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,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, 교통비 등 경비</u> 2. <u>문화·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</u> 3. <u>토론회, 세미나, 워크숍, 설명회, 간담회 참석자 식비, 교통비 등 경비</u> 4. <u>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,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식비, 교통비, 숙박비 등 경비</u> <u>제7조 ~ 제9조</u> (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)
--	--